

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
(김승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03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.

발 의 자 : 김승원 · 민병덕 · 허영  
김종민 · 김남근 · 이원택  
박상혁 · 염태영 · 이성윤  
이정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제7조제5항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기금으로 기금 증식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, 이를 위해 제7조제6항에 따라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국가보훈부가 보훈기금 증식을 위해 직접 사업장을 조성 후 사업장 운영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안정적으로 보훈기금 증식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국가보훈부가 기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게 증식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보훈기금 증식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(안 제7조).



##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의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,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.

1.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공익법인
2.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
3. 기금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행	개      정      안
<p>제7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~ ⑤ (생략)</p> <p>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의 사업을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공익법인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⑦ ~ ⑨ (생략)</p>	<p>제7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의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,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공익법인</li> <li>2.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</li> <li>3. 기금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</li> </ol> <p>⑦ ~ ⑨ (현행과 같음)</p>